

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김한택**

목 차

- I. 서 론
- II. 우주자원개발과 일반국제법
- III. 우주자원개발과 국제조약
 - 1. 1967년 우주조약
 - 2. 1979년 달협정
- IV. 결 론

* 이 논문은 필자가 “Fundamental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A Recent Exploitation of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라는 제목으로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ume 11, Spring 2018, Number 1)에 발표한 영어논문을 한국어로 수정·보완한 것으로 2018년 11월 23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법”으로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 htkim@kangwon.ac.kr

I. 서론

2015년 미국은 미국 시민과 기업에게 영리목적으로 우주자원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이하 CSLCA)¹⁾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총 4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편(민간항공우주기업경쟁력강화; Spurring Private Aerospace Competitiveness and Entrepreneurship), 제2편(상업적 원격탐사; Commercial Remote Sensing), 제3편(우주상업사무국; Office of Space Commerce), 제4편(우주자원의 탐사와 이용; Space Resource Exploration and Utilization)이 그것이다.²⁾

이 법은 미국의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에 관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인이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에게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소행성자원(asteroid resource)과 우주자원(space resource)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소행성자원이란 단일 소행성의 표면 또는 내부에서 발견되는 우주자원을 의미한다.³⁾ 그리고 우주자원에는 물이나 광물 등이 포함되며,⁴⁾ 다만 “무생물”만 이용할 수 있다.⁵⁾ 만약 미생물을 발견하여도 그 미생물을 영리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이른바 ‘소행성법’(Asteroid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은 민간우주개발회사에 달과 소행성을 포함해 우주에서 채취한 자원의 소유권과 판매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에서 “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회수에 참여한 미국시민은, 국제법적 의무 및 관련 미국법의 범위 내에서 해당자원에 대한 점유(possess), 소유(own), 운송(transport), 이용(use), 판매(sell)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하지만 이 법은 미국이 특정한 천체에 대한 주권 및 주권적 또는 배타적

1)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Pub. L. No. 114-190, 129 Stat. 704 (2015).

2) CSLCA의 제정과정과 내용에 관하여 김영주,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항공우주 정책·법학회지 제32권 1호』, 2017, pp. 419-477 참조.

3) 51 U.S.C.A. § 51301(1).

4) 51 U.S.C.A. § 51301(2)(B).

5) 51 U.S.C.A. § 51301(2)(A).

권리나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⁷⁾

2017년 7월 20일 룩셈부르크도 미국의 CSLCA를 모델로 하여 룩셈부르크 의회를 통하여 “우주자원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Law on the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을 제정하였는데, 2017년 8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룩셈부르크는 민간사업자들의 우주자원에 대한 채굴권을 보장해주는 법체계를 마련한 최초의 유럽국가가 되었는데, 동법에서 우주자원의 소유가 국제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탐사임무에 관한 승인 및 감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⁸⁾

이 논문은 이러한 국내우주법(national space law or municipal space law)의 제정으로 인하여 우주자원개발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우주법이 기존의 조약과 국제관습법, 결의 및 선언 등 연성법(soft law)으로 이루어져 국제법의 한 분야인 국제우주법(international space law,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일반국제법과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우주자원개발과 일반국제법

일반국제법상 ‘우주’라는 용어는 영어의 ‘outer space’ 또는 ‘space’를 의미하는데, ‘외기권 우주’ 또는 ‘외기권’으로도 표기된다. outer space는 ‘천체’(celestial bodies)를 포함하며, 천체는 ‘달’(moon)도 포함하고 있다.⁹⁾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의 Bin Cheng 교수는 이러한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천체사이의 공간을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으로 부르자는 제의를 한 바 있다.¹⁰⁾ 우주

6) 51 U.S.C.A. § 51303.

7) SEC. 403. DISCLAIMER OF EXTRATERRITORIAL SOVEREIGNTY.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by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United States does not thereby assert sovereignty or sovereign or exclusive rights or jurisdiction over, or the ownership of, any celestial body.

8) Han Taek Kim, Fundamental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A Recent Exploitation of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이하 Fundamental Principles로 약칭),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ume 11, Spring 2018, Number 1, pp. 38-39.

9)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Oxford, 1997, p. 527.

초 록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록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우주조약(OST), 달협정(MA), 비전유원칙,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 인류공동유산(CHM),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PUOS),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 유엔해양법협약(UNCLOS).